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개최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계획, ▲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❶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❷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❹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하였다.

<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 **서면심의 기간** : '25.4.18(금) ~ 24(목)
- **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14명
- **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심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심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복지·서비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을 보완하여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
-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25.1월 시행), 지원대상도 8만 6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확대한다.
- 최종중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25.7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월 공포, ’27.3월 시행)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건강>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4개소(6개소→10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7→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5개소→16개소)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2종(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확대(총 42개 품목→44개 품목)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육·교육>

-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1,896→1,980개소)한다.
-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확대(82→96개소)한다.

<소득·일자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3% 인상(342,510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2천 명 확대(3.2만 명→3.4만 명)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4차 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인프라도 확대(10개소→13개소)한다.

<체육·관광>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23년말 누적 99개소 지원).
-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2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82개소 까지 늘린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 저상버스 도입 지원(1,603억 원),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 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649억 원) 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한다.
-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구축(’25.하, 16실 28병상 규모)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2.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2%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담하며, 올해부터는 의무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되었다.
-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72조 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7,896억 원) 비율은 1.09%로 법정 비율(1%)을 달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0.02%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1,024개소 중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90개소(57.6%)이다.
- 올해 전체 공공기관(1,028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 * 2025년 공공기관 수는 1,028개소로 2024년 1,024개소 대비하여 4개소 증가
- 복지부는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교육과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2024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5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에 관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2019년 3월 제출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우리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에 73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견해를 2022년 9월 발표하였다.
- 이에 정부는 의사결정 참여, 장애여성·아동, 인식개선, 접근성, 생명 보호, 학대, 자립, 건강 등 협약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협약 조항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장애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장애여성·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본 방향 제시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추진,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 보호,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치료 예방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확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약 708만 건)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정보 통신 기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

- 【붙임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붙임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안 개요
- 【붙임3】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개요
- 【붙임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개요
- 【붙임5】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개요

담당 부서 <안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재경 (044-202-3280)
		담당자	서기관	박승빈 (044-202-3285)
<안건 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조현숙 (044-202-3325)
<안건 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담당자	사무관	홍지혜 (044-202-3304)
<안건 4>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책임자	팀 장	이영진 (044-200-6782)
		담당자	사무관	김준래 (044-200-678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위원회 기능**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3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30명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 위촉직(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 위촉위원 1/2 이상은 장애인

▲ 당연직(15명) : 국무총리, 복지부 · 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행안부 · 보건부 · 문체부 · 산업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방통위원장

◆ **최근 회의 개최 현황**

- '00년 위원회 구성 이후 '24년까지 25차례 개최

- * 제19차 회의('18.3.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등
- * 제20차 회의('19.1.30.)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9년 시행계획 등
- * 제21차 회의('20.3.27 ~ 4.3/서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등
- * 제22차 회의('21.3.23) '21년 시행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등
- * 제23차 회의('21.8.2) 탈시설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복지법 전면개정 등
- * 제24차 회의('23.3.9)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
- * 제25차 회의('24.3.28) 제6차 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25.4월 기준)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위원 (14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 석)	행정안전부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 석)	고용노동부장관
		(공 석)	여성가족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촉직 위원 (14인)	단체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이용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교육	박현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건강	신용일	부산대학교 재활의학교실 교수
	복지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조윤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나oun환	대구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활동지원) 대상 확대(12.4→13.3만명(+9천명))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 확대(205시간(+10시간))('25.1월~)
- (개인예산제)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 210명)을 보완한* '바우처 확대 모델' 시범도입('25.4~'25.9월, 9개 지자체 200명)
* 1종(활동지원) → 4종으로 확대(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발달재활)
- (장애아동)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인상(12,140→14,410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 완화(6→9세 미만, '25.1월~) 및 지원확대(8.6→10.4만명)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 (최중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842억원, 2,340명)
*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그룹형 1:1 지원 등
- (낮 활동)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2.1→ 2.3만명) 및 주간 활동서비스 연령제한 기준 폐지(18~65세→18세 이상)('25.3월~)
-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본사업 전환('25.1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시범운영 추진('25.7월~)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 전환 지원

-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 사업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월 공포, '27.3월 시행)
* (주요내용) 지원 체계(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원 내용(정보제공, 자립신청·조사, 활동지원, 정착지원금, 장애인주택) 등 규정
- (거주시설 전환) 장애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추진(1개소, '25.6월)

□ 장애인정기준 개선 추진

- (장애인정기준) 연구('23~'24년) 결과 토대로 법령 개정안마련('25.상), 장애계·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하여 개정안 심의 후 개정 추진('25.하)

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종합계획)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및 공청회·부처협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종합계획 수립('25.하)

□ 장애인 재활의료 체계 강화

- (재활의료) 제2기 재활의료기관 운영('23.3월~, 53개소) 모니터링 지속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환자 등 입원기간 확대('25.3월)
- (권역재활병원) 장애인의 재활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개원('25.하) 및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26년) 지속 추진
* 권역재활병원 단계적 개원: ('24) 7개소 → ('25) 8개소 → ('26) 9개소
- (어린이 재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4개소 개원 추진('25.하, 강원권(원주)·전남권(광주·목포)·경북권(대구))
*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2개소, 지정 2개소)·의료센터(건립 8개소, 지정 1개소) 설치 추진 중('18년~) / '24년말 현재 6개소 운영 중(병원3, 센터3)

□ 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

- (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24.2월~) 모니터링 및 주치의 교육, 홍보강화* 등 통해 사업 활성화 추진(연중)
* 시범사업 미참여 병·의원 대상 참여 독려, 장애인 특수학교 및 종합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홍보 강화
- (구강)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15개소) 미설치 권역(서울, 전남, 경북) 설치 지원(서울, 전남은 설치 진행 중, 경북은 신규지정 및 설치 지원)
* ('25.상) 서울 → ('26년) 전남 → ('27년) 경북 권역, 순차적 개소 예정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2종(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확대(총 44개 품목), 지원기준액 인상(9종) 등 지원 강화
- (급여) 재택치료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장애인용 유모차,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 등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검토(연중)

3.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 (보육)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지속 추진
* ('24년) 1,896개소 → ('25년) 1,980개소(연중)
-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영아·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추진
* 유치원 특수학급 수: ('24년) 1,623개 → ('27년) 1,837개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다운학교*' 지속 확대('24년 173교)(연중)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장애학생 수업 지원을 위한 협력교수, 장애공감 프로그램 등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모델학교
- (진로·직업교육) 다양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진로설계 지원 강화
 -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직업훈련 지원 및 장애학생 맞춤 직업교육 제공(연중)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고등교육)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강화 및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24년 10개) 운영지원 확대 추진(연중)
* 관련 연구·실태조사, 자료 개발·보급, 연수·컨설팅, 진로·취업 지원 등
- (평생교육)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확대(82→96개)
 -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온라인 콘텐츠 포함)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수요를 고려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 촉진 및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학습자가 경제적 부담없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속 지원

4.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342,510원(+7,700원, 2.3%) 인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130→138만원(+8만원, 단독가구 기준))

□ 장애인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생산물 판매 촉진 지원

- (일자리) 장애인 공공일자리 2천 명 확대(31,546→33,546명) 및 신규 직무 2종(키오스크 안내, 병원 내 환자이송보조·안내) 적용('25.1월~)
 - 장애인카페·편의점 등 민·관 연계 특화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장애인카페 10개소, 편의점 5개소 설치 목표)(연중)
- (우선구매) 상향된 우선구매 목표비율(1.0→1.1%)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권역별 교육('25.4월), 미달기관 의무교육, 우수기관 표창('25.9월) 등 추진

□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 (의무고용)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역량에 맞춘 직무분석·개발, 고용환경 개선 등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 제공(연중)
- (지원금) 장애인 추가 고용 유도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 무상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장 대상 '도약지원형' 신설 지원(연중)
 - * '25년 '도약지원형' 지원금을 신설, 현행 10억 → 최대 5억 추가 지원
- (4차산업 인재 육성) 4차 산업, 디지털 유망분야 등 장애인 적합 직무 40건 개발 및 디지털훈련센터 인프라 확대(10→13개소(+3개소))(연중)

□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지원

- (창업) 온라인 및 특화교육, 컨설팅, 사업화지원 등 통한 창업지원
- (성장기반) 유망 아이디어 상품 등 시제품제작 지원(시제품 15개사 등), 수출지원, 공공판로 등 역량 향상을 통한 성장 지원
 -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매 지원(30개사)('25.상)

5.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 장애인 체육 참여환경 조성

- (체육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내외 신규선정 지원('24년말 기준 누적 99개소 지원, 25개소 개관)
- (스포츠강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예산 29.8% 증액(189.1억원 → 246.4억원), 가맹시설 지속 확대 등 통해 스포츠 강좌 이용지원 강화
- (스포츠클럽)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12개 지정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지원('25.4분기)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 (열린관광지) 관광취약계층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열린 관광지’ 20개소 신규 선정·조성(162→182개소(누적))(연중)
- (무장애 관광권역)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한 무장애 관광권역 1개소 신규 선정('25.2월)(총 3개 권역(강릉('22), 울산('24))) 및 조성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강화

- (접근성) 주요 문화시설 및 시·도별 거점 문화시설 대상 콘텐츠·정보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지원 확대(12개, 9억원 → 15개 12억원)('25.4~12월)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수정 연구('24.12~'25.3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유지 사용승인 등 재정당국 협의(연중)

□ 장애예술인 지원 강화

- (지원체계) 장애예술인의 활동기간을 고려한 중·장기적 창·제작 활동 위해 [첫 지원-창작 과정-창작 발표 지원]의 활동단계별 지원체계 마련('25.1월)
- (공연·전시장) 기획공연·전시 등 통해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 예술극장’ 및 장애예술 표준전시장 ‘모두미술공간’ 운영 활성화

□ 디지털 정보접근성 및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 (키오스크) 장애인·고령자 등의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24.3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방법·기간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25.3월)
- (방송) 시각·청각장애인이 VOD 등 비실시간 장애인방송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사별(지상파 4사) 홈페이지 표준화 방안 마련 추진
- (교육) 전국 12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866회)

6. 장애인 이동, 편의, 안전 등 권익 향상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운영개선

- (저상버스)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예산 1,603억원) 및 저상버스 제원에 맞는 ‘버스정류장 표준 모델’ 보급(‘25.12월)
-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속 지원(예산 649억원)
 -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 운영(‘25.12월)
 - 강력범죄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규정 마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25.1월)
- (교통복지지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이동편의·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복지지표 근거 마련·조사(‘25.12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도단위 조사) 시행 및 발표(‘25.11월)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추진

- (대상 확대) 자문단 구성하여 시설 접근성 실질적 보장 여부 등 검토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추진(‘25.12월)
- (BF인증) BF(Barrier Free) 인증기관(‘24년 11개소) 신규 지정(‘25.11월), 인증 처리 활성화를 위해 인증 절차 및 수수료 체계 개선 추진(‘25.12월)
- (키오스크) ‘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연구결과 토대로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종합적으로 분석(‘25.6월)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안전체험시설) 2단계 건립 중인 국민안전체험시설(7개소)에 Barrier Free 공간 구성 등 재난약자 접근성을 고려한 세부 건립·운영계획(안) 수립 독려('25.6월)
* 완료('17~'22년): 7개소(인천 서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경기 오산, 충북 청주, 경남 합천, 제주)
건립 중('24~'28년): 7개소(서울 도봉, 부산 해운대, 대전 유성, 경기 의정부 파주, 전남 장흥, 경북 상주)
- (감염병 전담병상)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구축('25.하, 16실 28병상 규모)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학대 점검 체크리스트(조사표) 개발('25.3월)
- (보도권고기준)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안) 언론 모니터링('24년) 결과 등을 반영하여 권고기준 수립 및 공표('25.6월)
- (지원기관 강화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 인력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확대(10→12개소) 노력 지속(연중)

□ 정신장애인 권익증진

- (동료지원) 회복된 정신질환자 중심의 동료지원센터(5개소) 지속 운영, 신규 2개소 추가 운영 지원 및 안정적인 동료지원센터 운영 방안 마련('25.4월~)
- (인식개선) 정신건강의 날 행사 및 정신건강 홍보주간(10월) 지속 운영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향상 및 동참 유도('25.10월)

□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 (피해지원)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26개소, 보호시설 13개소) 종사자 보수교육 통한 역량강화, 현장점검 등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연중)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 이행방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25.4월)

□ 개요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의무
 - * 우선구매 비율: (∼'24년) 1% → ('25년) 1.1% (중증장애인생산물법령 및 고시 개정('24년))
- 중증장애인생산물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공표

□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 (**'24년 실적**) 1.09%로 법정비율 달성, 전년 대비 +0.02%p
 - 전체 총구매액 72조 1,696억원 대비 7,896억원 구매(전년대비 +282억)
 - 공공기관(1,024개소) 중 1% 이상 구매 기관은 590개소(57.6%)
 - * ('20) 562(55.0%)→ ('21) 549(52.9%)→ ('22) 545(52.3%)→ ('23) 585(56.3%)→ (**'24) 590(57.6%)**
- (**'25년 계획**) 우선구매 목표 1.35% (1,028개 기관 / 9,582억원 구매계획)
 - '25년 제품·서비스 구매계획 취합 후, 무기·전력기기·설계 용역 등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에서 제작 어려운 제품 등 일부 제외 반영

□ 향후 일정

-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표(~4월말 복지부 누리집)
- 법정구매의무 미달 기관 대상 시정요구서 발송(5월)
 - 구매실적 저조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제도교육·판촉 지원 등

□ 협조 요청

- 우선구매비율 (1→1.1%) 상향에 따른 우선구매실적 실적 달성 협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정의) 중증장애인들이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25년부터 적용)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

- (의무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정의)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 (지정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지정 현황) 814개소*('24.12월 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13, 장애인복지단체 194,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7

** ('19) 630개 → ('20) 674개 → ('21) 722개 → ('22년) 762개 → ('23년) 790개

- (생산품의 종류) 200여 개 품목



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개요

- (의의)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장애인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
- (비준) 2008. 12. 11. 가입(2009. 1. 10. 발효, '25년 현재 192개 당사국)
- (구성)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제4조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제5조~제33조	평등 및 비차별, 장애여성,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생명권, 위험상황 발생시 장애인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당사국 책무, 법 앞의 평등, 사법에 대한 접근, 신체의 자유 및 안전, 비인도적·굴욕적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착취·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을 존중받을 권리, 이주 및 거주지 선택과 국적 취득 절차상의 자유,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신체 거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사생활 존중, 가정 형성과 가족 생활의 존중, 교육 받을 권리, 건강을 향유할 권리, 재할, 근로의 자유와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 유지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정치와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 및 여가생활을 향유할 권리, 국가의 통계와 자료 수집 의무, 국제협력 의무, 국내 이행 및 감독 의무
제34조~제50조	당사국 보고서, 보고서 심사, 회의, 서명, 발효 등 절차적 규정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 및 직권조사제도

② 국가보고서 작성·심의 경과

- 제1차 국가보고서는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이내, 이후 매 4년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 의무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쟁점목록 전달	2014. 6.	2018. 2.		-		
국가보고서 제출	2011. 6.	2019. 3.		2031. 1. 예정		
심의	2014. 9.	2022. 8.(통합심의)		2032.(통합심의 예정)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소관
1~4조 일반 원칙 및 의무	
• 협약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 관련 법 및 정책 개선	복지부
• 장애 인정기준 개선	복지부
• 장애유형별 특성과 욕구가 인정될 수 있는 체계 마련(시청각장애인, HIV/AIDS가 있는 장애인 포함)	복지부
•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장애 개념 확대(장애등록, 판정체계 개선 포함)	복지부
• 장애인권리협약 교육(공무원, 판사, 검사, 보건의료인 및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	복지부
•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복지부
5조 평등 및 비차별	
• 장애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복지부
• 장애인이 공적지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협의 체계 마련	복지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평가 및 교차다중차별 개선 전략 수립 및 시행	복지부
•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원대상에 포함	복지부
• 합리적 편의 제공에 관한 영역별 사례 조사 및 개선	인권위
6조 장애여성	
• 장애여성(아동)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복지부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장애여성(여아) 관련 정책과제 포함 및 이행(여성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포함)	여가부
	복지부
• 정부 정책 내 장애 여성 관련 사업 성인지예산서 대상 과제 선정 등 지원	복지부
• 차별금지 실태조사에 기초해 교차다중차별 개선 전략 수립 및 시행(장애여성 및 여아)	복지부
• 장애여성 대상 교육 지원 등 관련 사업 활성화 추진	복지부
• 행정, 사법, 입법 영역에서 장애여성 참여 보장	인사처
	법원행정처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에 장애여성 단체의 참여 보장	복지부
7조 장애아동	
• 아동 총회에 장애아동 참여 보장	복지부
• 장애아동(보호자)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된 장애아동 정책 추진	복지부
• 장애의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장애아동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
8조 인식 제고	
• 장애인식 개선 국가전략 수립 및 시행(장애인식 국민조사 실시 포함)	복지부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복지부
9조 접근성	
• 6차 편의증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협약에 따른 모든 범위의 접근성 의무 이행방안 포함)	복지부
• 장애인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장애인콜택시 포함) 접근성 개선	국토부
• 장애 다양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안내 방식 개선	국토부
•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공공장소(여객터미널 등) 개선	국토부

주요 내용	소관
•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공공장소(도로, 공원, 공공장소 등) 개선	복지부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시행	과기정통부
10조 생명권	
• 장애인(가족) 자살 실태 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시행	복지부
• 장애인 실종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복지부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조치 개선	복지부
11조 위험상황 발생시 장애인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당사국 책무	
• 포괄적인 장애인 재난 및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행안부
• 코로나19 등 팬데믹 회복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복지부
• 팬데믹 등 비상상황에서 위기 장애인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복지부
•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 대응 매뉴얼 마련	복지부
• 긴급상황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행안부
12조 법 앞의 평등	
• 의사결정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장애인(가족)에게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	법원행정처 복지부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사법접근에 관한 장애인 참여를 배제하는 법률 및 제도 개선 포함)	법무부
•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권 보장 및 개별화된 지원 체계 구축	법무부
• 장애인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법무부
•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 도입 실행	법무부
• 사법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 보장(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포함)	법원행정처
• UNCRPD 교육(법관 및 법 집행 공무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 법조윤리시험 및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확대	법무부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확대	교육부
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민법의 성년후견 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 규정 등)	복지부
•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치료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복지부
15조 고문 또는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 다양한 유형의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 진정접수와 직권조사를 통한 권리구제 실시	인권위
• 다양한 유형의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진정 처분 절차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복지부
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 장애인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장애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포함)	복지부

주요 내용	소관
• 폭력 피해 장애여성(여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인프라 확대 포함)	여가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복지부
17조 신체적 · 정신적 온전성을 존중받을 권리	
• 장애인 출산의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복지부
18조 이주 및 거주지 선택과 국적 취득 절차상의 자유	
• 장애인 입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제11조) 개선	법무부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 로드맵, 국정과제 등에 따라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22~'26년)의 본사업 전환('27년)	복지부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및 확대	복지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법률의 제정 및 이행	복지부
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공공정보(미디어 포함)를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제공	방통위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인터넷, 스마트폰,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과기정통부
•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제공방식 개선	방통위
22조 사생활의 존중	
• 장애인 실종예방 정책 수립 및 이행(장애 인권적 모델 반영 포함)	복지부
• 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사생활 권리 침해 최소화)	복지부
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출산 및 양육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정비	법무부
• 장애인 부부 및 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
•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강화	복지부
24조 교육	
•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 개선대책 마련	교육부
• 교직원 대상 통합교육 수행 관련 교육훈련 제공	교육부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한 교육권 보장	교육부
• 유보통합 이후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용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교육부
25조 건강	
• 장애인을 차별하는 상법 제732조 개정	법무부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포함)	복지부
• 보건의료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 접근권(의사소통 포함) 관련 교육 강화	복지부
• 장애인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	복지부
27조 근로 및 고용	
•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 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차별적 법률 개정 포함)	복지부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추진	고용부
• 중증장애인(탈시설 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포함)이 개방된 노동시장으로의	고용부

주요 내용	소관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실행	복지부
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장애인 소득실태 분석에 기초한 소득보장 전략 수립 및 이행	복지부
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장애인 참정권 보장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선관위
• 선거(투표) 시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선관위
30조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장애인(특히 장애아동)의 문화활동 기회 보장 방안 마련 및 시행	문체부
• 장애인(특히 장애아동)의 여가활동 기회 보장 방안 마련 및 시행	
• 장애인(특히 장애아동)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 방안 마련 및 시행	
31조 구체적 의무	
• 장애 통계 체계 개선	복지부
• 장애인 권리이행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 시행	복지부
•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및 홍보	복지부
32조 국제협력	
• 범장애계 협력에 기반한 포스트 인천전략 수립 실행	복지부
	외교부
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 보장	복지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을 위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자율성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위

[안건4]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개요

□ 개요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를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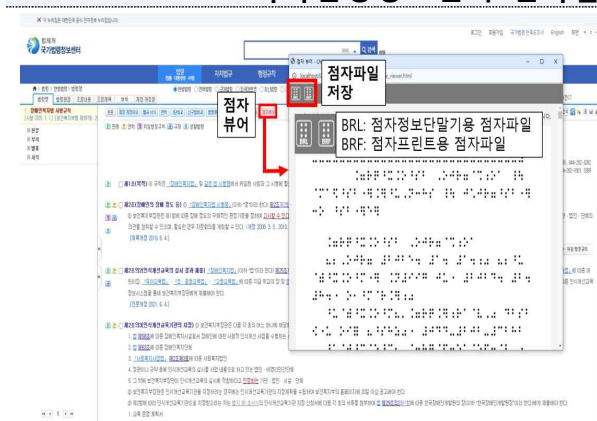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법령정보는 공공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시각장애인 대상 설문조사('24.3.), 간담회('24.4.)*, 모니터링단** 의견 청취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 점자파일 지원 요청이 다수 제기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 논의
 - **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을 구성('24.6.1.)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의견 수집
- 법제처는 50만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약 708만 건(3.27. 기준)의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등 법령정보를 전자점자로 제공 추진(4.20.~)

□ 주요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시각장애인이 곧바로 점자 문서로 변환하여 볼 수 있도록 점자뷰어와 파일저장 방식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문서 제공 및 다운로드



- **점자 뷰어:** 새창에 점자로 변환된 내용이 나타나고 점자정보단말기를 연결하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읽기 가능
- **점자파일 저장:** 점자파일을 저장하여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점자 프린터로 출력해 법령 읽기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대상 전자점자 서비스 적극 홍보
-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지속 개선 및 안정적/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완(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고도화, 점자 품질 향상 등)